

수 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2022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홍보 협조 요청 (유관기관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근로복지 편익 증대 및 지역기업에 대한 일자리인식 개선을 위한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신청 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협조를 요청합니다.

- 가. 사 업 명 :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
- 나. 접수기간 : 시·군별 사업비 소진시까지
- 다. 접수방법 : 사이트 접수 (<http://일자리창출우수기업.kr>)
- 라. 문 의 처 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
- 마. 요청사항 : 해당 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
- 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(붙임), 안내 팸플렛(별송)

붙임 2022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공고문 1부. 끝.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



수신자

경산상공회의소 회장, 경주상공회의소 회장, 구미상공회의소 회장, 김천상공회의소 회장, 안동상공회의소 회장, 영주상공회의소 회장, 영천상공회의소 회장, 영주고용복지+센터 소장, 안동고용복지+센터 소장, 칠곡고용복지+센터 소장, 구미고용복지+센터 소장, 경주취업지원센터장, 김천취업지원센터장, 구미취업지원센터장, 영주취업지원센터장, 영천취업지원센터장, 상주취업지원센터장, 칠곡취업지원센터장

★사원

정민주

팀장

김민교

실장

전결 05/13
이병철

협조자

시행 일자리창출팀-774 (2022. 5. 13.) 접수 ()

우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) / <https://gepa.kr>

전화 054-470-8593 /전송 / 공개

STOP 가짜정보 START 스마트

2022 『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』 신청기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 16개 시·군과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근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『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』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.

2022. 3.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1.접수기간 : 2022. 4. 6.(수) ~ 시군별 예산소진 때까지

2.자격요건 및 모집규모

○ 자격요건 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① 본사 또는 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(제조업)
- ②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 증가(인원)가 있으면서, 2022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

예시) 21년 12월 말 고용인원 30명 -> 신청일 현재 고용인원 31명 신청 가능

(신규 채용 2명 = 대체인력 1명 + 신규인원 1명)

청년(만19 ~ 39세)(단, 외국인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)

신규청년채용인원에 따른 지원기준

- 2인 이상 ~ 3인 이하 : 10백만원(단,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)
- 4인 이상 ~ 5인 이하 : 20백만원
- 6인 이상 ~ 7인 이하 : 30백만원
- 8인 이상 ~ : 40백만원

* 신규기업의 경우 시군 추천 시 신청 가능

* 시군별 배정기업 수 및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및 심사대상 여부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

* 1기업-1지원 :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

4. 지원내용 : 신규청년채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

- 2인 이상 ~ 3인 이하 : 10백만원(단,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)
- 4인 이상 ~ 5인 이하 : 20백만원
- 6인 이상 ~ 7인 이하 : 30백만원
- 8인 이상 : 40백만원

※ 근로환경개선사업 세부 지원내용

가. 시설 개보수 지원 : 휴게실, 기숙사, 체력단련실, 목욕시설, 화장실, 구내식당 등 노후화로 인한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

나. 물품 구입 지원 : 냉난방기, 운동기구, 냉장고, 세탁기, 공기청정기 등 기숙사, 휴게실, 식당 등 근로자 복지시설 내 근로환경 물품 지원

- 단, 물품 구입은 지원금액의 50% 초과 불가
- 물품별 한도액 설정(초과금액 기업부담, 아래 물품 이외 구매 불가능)

• 냉난방기	1개당 3,500천원 이내	• 세탁기	1개당 1,000천원 이내
• 운동기구	1개당 1,500천원 이내	• 건조기	1개당 1,500천원 이내
• 안마기기	1개당 2,500천원 이내	• 공기청정기	1개당 1,000천원 이내
• 냉장고(업소용 기준)	1개당 1,800천원 이내	• 소파(4인기준)	1개당 700천원 이내
• 냉장고(가정용 기준)	1개당 1,000천원 이내	• 청소기	1개당 700천원 이내
• TV	1개당 1,300천원 이내	• 커피머신	1개당 700천원 이내
• 에어컨(벽걸이형 기준)	1개당 1,000천원 이내	• 비데	1개당 400천원 이내
• 에어컨(천장형 기준)	1개당 1,500천원 이내	• 컨테이너(휴게실용도)	1개당 8,000천원 이내

다. 유의사항 : 지원 시설 및 물품 등은 최소 3년간 유지하여야 함

- * 시군별 배정기업 수 및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및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
- * 공사인 경우 자가 시설만 인정(단,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, 장애인 기업 등은 근로자 작업환경개선 지원신청 가능 및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)

5.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방법 : 신청페이지 접수(<https://일자리창출우수기업.kr>)

○ 제출서류 : 청년일자리창출우수기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

※ 신청서식 : 신청페이지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(www.gepa.kr), 시·군 홈페이지 참조

○ 문의처 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(☎054-470-8597)

- E-mail : hw99088@gepa.kr

- [붙임 2] 사업계획서 1부
 - [제출 1]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)
 - [제출 2]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2부(21년 12월/신청일 기준)
 - [제출 3]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 각 1부
 - [제출 4] 최근 2년간 재무제표(2020, 2021)
 - [제출 5]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국세·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
 - [제출 6] 원가계산검토보고서(1,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한함)
-
- 신청 후 제출서류
 - [붙임 3] 결과보고서 1부

8. 유의사항

-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하여 견적서(비교견적서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하며, 경북 소재 기업으로 업체 선정
-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
- 허위 또는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
- 신청한 공사 및 물품이 근로자 공동사용이 아닌 대표 및 임원, 방문객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·물품일 경우 지원 불가능
- 지원 시설 및 물품은 3년간 유지하여야 하며,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
 - 예시) 휴게실에 비치하였던 안마기를 대표실 등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, 에어컨 등 지원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등
- 상기 유의사항 또는 공고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,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운영기관의 해석에 따름